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04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이만희의원안)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29.

다. 회 부 일 : 2026. 1.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67조).

Ⅲ. 검토의견

1.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이만희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67조) ☐ 특례 ① 법인세 - 어업소득: (3,0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 월수/12) 한도 내 면제 - 그외 소득: (1,2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 월수/12) 한도 내 면제 ② 배당소득세 - 1,200만원 이하 면제 * 나머지 5% 세율로 분리과세 ③ 양도소득세 - 어업용 토지 현물출자: 100% 감면 (어업회사법인도 대상) ☐ 적용기한: <u>2026.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30. 12. 31.</u> ☐ 시행일: 2027. 1. 1.부터 시행

* 이만희의원안 2026. 1. 29. 발의(의안번호 16404)

☐ 개정안은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 영어조합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특례,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말로 연장하려는 것임.

☐ 영어조합법인은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어업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법인임.¹⁾

이는 어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영어조합법인 제도는 1996년 12월 31일에 도입되었고,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1998년 1월 1일에 도입되었음.

조세특례 내용은 ① 법인소득의 원천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3,0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 월수/12’ 한도 내에서 면제되고, 어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1,2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 월수/12’ 한도내에서 면제됨.²⁾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1,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면제됨. 그리고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은 소득세율 5%가 적용되며 분리과세가 적용됨.³⁾

③ 그리고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100%를 감면함.⁴⁾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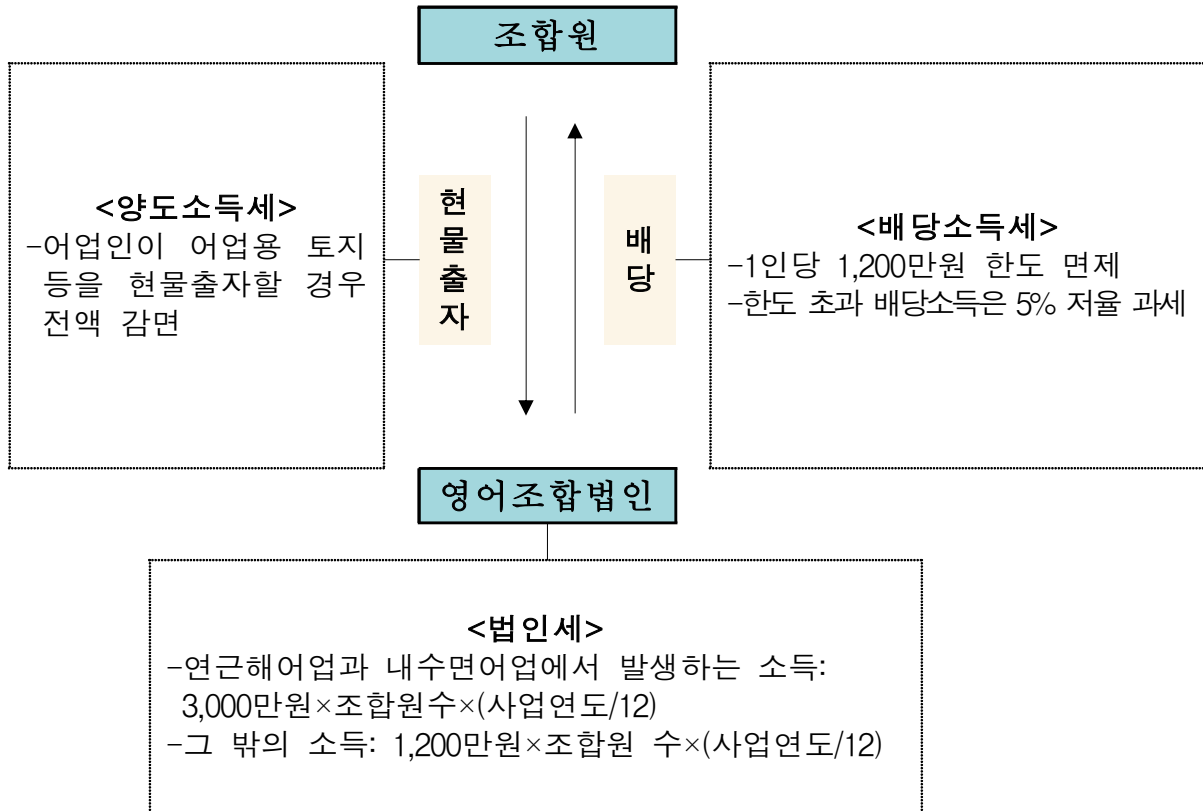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어조합법인에 조세특례 구조]



동 특례의 조세지출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 2024년에는 39억원이 지출되었음.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51억원과 52억원이 지출되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소득세	0.8	0.2	1	0.02	0	0	0
법인세	31	29	35	35	39	51	52
합 계	31	29	36	36	39	51	52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어업조합법인 및 어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농·어가와 도시근로자 간 가구소득을 비교하면, 어가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비해 낮은 편임. 2024년 어가소득은 6,365만 2천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8,646만 3천원의 73.6% 수준이었음.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 어가소득 비율이 80%를 초과하였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이 비율이 80% 미만으로 유지되어 왔음.

[농·어가와 도시근로자 간 가구소득 비교]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C)
	농가소득(A)	비율(A/C)	어가소득(B)	비율(B/C)	
2015년	37,215	64.4%	43,895	75.9%	57,800
2016년	37,197	63.5%	47,077	80.3%	58,613
2017년	38,239	63.7%	49,016	81.6%	60,033
2018년	42,066	64.9%	51,836	80.0%	64,821
2019년	41,182	59.3%	48,415	69.7%	69,432
2020년	45,029	62.2%	53,187	73.5%	72,360
2021년	47,759	64.1%	52,392	70.3%	74,505
2022년	46,153	59.1%	52,911	67.7%	78,114
2023년	50,828	60.5%	54,779	65.2%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86,463

주1: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의 총 소득을 말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을 말함

주2: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017년부터 4개 분기 산술평균으로 계산한 값을 기재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동 조세특례는 어업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그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 면제를 통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데, 조세특례를 종료하면 어업인의 재산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둘째, 어업조합법인의 생존력을 높여 어촌의 인구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어가규모는 4만 900가구로 전년대비 2.1% 감소했고, 어가인구는 8만 4,000명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했음. 어가수와 어가인구는 2020년 이후에 감소추세에 있음.

[어가 및 어가인구 추이]

(단위: 천호, %, 명, 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어가수	43.1	43.3	42.5	41.8	40.9
- 총가구 중 비중	0.20	0.20	0.19	0.18	0.20
- 전업어가수	16.0	19.8	18.7	16.7	17.0
- 어가당 가구원수	2.3	2.2	2.1	2.1	2.1
어가인구	97.1	93.8	90.8	87.1	84.0
- 총인구 중 비중	0.19	0.18	0.18	0.17	0.20
- 65세 이상 비중	36.0	40.5	44.2	48.0	50.9
- 농가인구 대비	4.2	4.2	4.2	4.2	4.2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와 같은 어가수와 어가인구의 감소는 어촌의 인구감소를 유발하며 지방소멸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임.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세

특례가 종료되면 어업조합법인의 세부담 증가로 어업조합법인의 생존력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자금 부족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어업조합이 해산되면 조합원은 일자리를 찾아 어촌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어촌의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려는 것인데,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동 조세특례는 과거 적용기한이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되고, 2021년 말에서 2023년으로 2년 연장된 이력이 있음.⁵⁾

문 의 처
02)6788-5155

5) 참고로 재경부는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 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4년 연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